

야 하고,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지역사회중심(CBR) 이어야 한다. 또한 정책결정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있어야 현실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것이고, 장애인복지정책은 명시적이어 하고, 국가 책임주의 원칙이 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아무리 중증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직업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장애인의 통합교육이 가능하기 위해 일반학교 교육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 물리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장벽제거를 통한 접근성을 높여야만 한다.

한편 우리 사회는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하며 국가와 기업, 시민사회가 균형을 이를 때 선진사회라고 한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크다 할 수 있겠다. 시민사회단체가 장애인과 함께 하는 모습은 대사회, 대정부를 향해서 발표하는 각종 성명서에 장애인의 입장을 반영하고, 시민단체에서 실시는 각종 캠프에 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각종 집회에 수화통역과 점자 안내문이 배치되고, 사무실은 가능하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일 것이다.

장애인 문제에 있어 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집단은 기업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산업재해와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다. 두 요인 모두 경제활동 과정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하 직재법)이 사회연대책임이라는 이념이 배경이 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가들은 이러한 사회적인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 직재법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 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보다는 피해가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법에 의해 고용 가능한 장애인은 4만 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법 시행된지 10년이 지나고 있는 현재 고용된 장애인은 1만 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애인의 일 할 기회를 확보해 주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재법을 충실히 지키고, 더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도움을 준다면, 장애인들은 그 기업에 우호적인 소비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결과적 평등이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는가.

우리 사회는 장애를 가지는 순간부터 장애인은 최소 수혜자가 되고 만다.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어렵지 않게 이용하던 길이 이제는 모두가 장벽으로 느껴지게 된다. 그래서 롤즈는 정의론에서 '최소수혜자의 최대극대화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라야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보고 있다. 다시말하면 최소수혜를 받는 계층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가능한 사회라야 정의로운 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과 시민 모두가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우선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획일화된 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할 수 없다.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에서라야 장애인들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사회적 역할이 있어야 완전참여와 평등이 실현되며, 비로소 장애인 인권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접근권행사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

권선진(평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머리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1997년) 제4조에 의하면 접근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 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 인권헌장(1998년) 제4항에도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는 권리를 가진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조문은 장애인의 이동권, 시설이용권, 정보접근권 보장을 말한다.

장애인의 접근권은 결국 편의시설의 확보와 사회적, 물리적 장벽의 제거가 주된 내용이다.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을 탈 수 없거나 턱이나 계단이 있어 건축물에 접근할 수 없으며, 보편적인 정보를 습득하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다면 이는 곧 차별이고 인간다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편의시설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혀줄 수 있지만 형식적이고 분리 지향적으로 설치될 경우 결과적으로 또 다른 차별과 분리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편의시설은 전체적인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특별히 취급되어 격리되어 설치되지 않아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은 늘어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또 다른 차별과 분리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반인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이 되어야 공동체 의식과 문화가 형성됨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을 실현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이동상의 장애만이 아니라 감각의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접근의 문제가 있다. 모든 국민에 있어 보편적 기회는 매우 중요하며, 보편적 서비스를 생활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는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를 일상생활에서 어떤 장애

를 가진 사람도 누구나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편의시설이나 무장애환경은 물리적 측면에만 국한되어서는 진정한 의미의 장애인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이어야 한다.

2. 사례를 통해 본 장애인 접근권 차별 개선

○ 장애학생 추락사 사건

지난 10월 10일 서울 구산 중학교 특수반 2학년에 재학중이던 임계전 양 (지체와 정신지체 중복장애)이 계단 끝에 걸려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계단에 난간이라도 있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불상사였다. 학교측은 사고가 나자 ‘시설을 할 수 없다. 솔직히 말해서 2천명이 다니는 큰 학교에 장애아 13명 때문에 시설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무책임한 변명을 하고 있다.

학교와 같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계단의 난간을 갖추는 것이 어떻게 장애학생들만을 위한 시설인가? 장애를 갖고 있지 않는 학생일지라도 그런 시설 아래에서는 임계전 양의 경우와 같은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신변에 조금이라도 위해 가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마땅히 솔선수범해서 고치는게 학교의 마땅한 의무이다. 더군다나 장애학생들이 불편해 하는 시설이나 사고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방치해 둔다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비정한 일이다. 정부에서도 학교시설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월간 *{함께 걸음}*, 1995년 11월호)

이와 같은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들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는 시각장애인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지하철 역사나 공사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들도 있다. 물론 이러한 사례는 편의증진법 제정 이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현재에도 장애인 편의 또는 기본적인 시설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편의시설이 장애인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 사항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주로 언론을 통한 사회적 이슈가 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주요 일간지 및 장애인 관련 신문이나 잡지 등에 이러한 기사를 다루게 되면 사회적 반향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장애인 차별에 관한 인식을 확산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개인적 문제나 차별행위로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조직적인 대응을 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장애인 관련단체 및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연대 활동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접근과 개선의 방향을 정립해 갈 수 있을 것이다.



○ 투표소 계단 오르내리기 겁나 차라리 기권

전국 투표소 중 17%가 지하나 2층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 유권자(127만명)의 불편으로 기권이 예상된다. 중앙선관위에 의하면 전국 13,780개 투표소 지하가 364개, 2층 1897개, 3층이 88개로 전체의 17%가 투표가 불편한 곳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조사에서 응답자의 49.6%가 투표소 위치를 장애물로 응답하고 있으며, 훨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기표소도 문제, 남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장애인을 투표소까지 데려다주는 119 구조대도 올해부터 선거법에 저촉되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한국일보 2000. 4. 5)

○ 참정권 확보 소송낸 서승연씨

지난 4.13 총선 당시 경기 광주군에 살고 있는 훨체어 장애인 서승연씨는 부모님과 함께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 장소인 도청면 복지회관을 찾았다. 그런데 투표소가 하필 가파른 계단 위 2층에 있었다. 훨체어를 타는 서승연씨는 투표를 할까 말까 망설였지만 그래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선거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랬는데 결국 서승연씨는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투표를 포기하고 말았다.

그날 벌어진 상황을 서승연씨를 대신해 투표장에 올라갔던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선거 관계자들에게 투표용지를 교부받으면서 밑에 훨체어를 탄 장애인이 있으니 도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자 중 한명이 태연스럽게 ‘다음번 선거는 1층에서 할테니까 그때 하지요’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제가 화가 나서 책임자인 관계자에게 따졌습니다. 장애인이 투표하러 왔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그랬는데 한술 더 떠서 ‘그럼 들판에서 투표하나’라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비웃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났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귀중한 한표를 이렇게 묵살할 수 있느냐. 가만 있지 않겠다’라고 소리친 다음 투표장을 나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서승연씨는 소송한 이유를 “일단 투표할 내 권리를 뺏긴 거니까 권리를 뺏겼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투표장에서 당신 다음에 해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내 표와 권리 를 빼앗겼으니까 그 권리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월간 《함께 걸음》 2000년 7월호)

지난 6월 7일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참여연대 등 단체는 4. 13 총선에서 장애인들이 투표소의 편의시설 미비로 투표를 하지 못해 선거권을 침해 당했다며 1급 지체장애인 서승연(32) 씨 등 장애인 8명을 내세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장애인 1인당 2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모두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앞서 4월 26일 서승연씨는 두 단체와 함께 현직 판사인 4. 13 총선 당시 경기 광주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임모 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성남지방 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고소장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23조(선거권 등 행사의 편의제공)에는 ‘장애인 선거권 행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비의 설치, 선거권 행사에 관한 홍보,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군 선관위는 직무를 게을리, 안일하게 처리함으로써 ‘장애인과 가족이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하며 이를 통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함에 있어 부당하고 불편함을 겪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피고인을 엄히 처단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사안은 장애인들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참정권의 제한과 이에 대한 대응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기본적인 권리를 갖고 있으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투표를 의사가 있더라도 투표 장소에 대한 접근의 문제, 정보의 제한 등으로 기본권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장애인들이 편의시설 미비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건국이후 수많은 선거가 있었지만 장애인관련단체가 편의시설 미비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없었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자신의 장애만을 탓하며, 체념하고 말았던게 사실이다. 이와 같이 기본적인 참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필요로 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인 투표를 돋는 조치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장애인 참정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이 분명한 만큼 이에 대한 보상과 관계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대응보다는 유사한 차별을 받은 장애인과 관련단체의 도움을 받아 집단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실제로 몇 해전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만족모델투표소]를 설치해 모의투표를 실시하고, 이 투표소에서는 점자안내판, 촉지도, 빙칸에 기호를 점자로 표시한 보조용구,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낮은 투표함 등을 마련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와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자 배치 등을 준비한 바 있다. 또한 장애인의 실질적 선거권 보장은 정보접근에 달려있다고 보고 [장애인 선거권보장을 위한 TV수화 및 자막방영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 후보들의 TV토론에 수화통역자를 배치도록 한 바 있다.

○ 장애인 탑승을 꺼리는 시내버스

지체장애인 5급인 H씨(47세)는 서울 신설동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가 장애인을 태우지 않고 계속 지나치자 화가 난 나머지 버스를 세우기 위해 지팡이로 버스 유리창을 깨 입건된 사건이 일어났다. H씨는 신설동 로타리에서 1시간째 버스를 기다렸으나 이미 두 대가 그냥 지나쳤다. 3번째 버스가 도착하자 지팡이를 짚고 버스 쪽으로 뛰어갔고, 출발하는 차를 세우기 위해 지팡이로 버스 유리창을 두드렸다. 유리창 2개가 부서졌고, 종고제품 노점상을 하는 H씨는 그날 2만4천원을 벌고 집으로 돌아가려다 발생된 사건이다.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직원차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지체장애인 A씨는 공공시설인 구청을 방문했는데 주차를 하려고 보니 장애인 주차구역에 직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다른 곳에는 마땅히 주차를 할 곳이 없어, 직원을 상대로 장애인용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요구하다가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관련 단체에 신고하였다.

○ 미국의 대중교통 승차거부 사례

미국에서 1981년 있었던 사례로서 뉴욕의 휠체어 장애인인 데니스 메크에이드는 대중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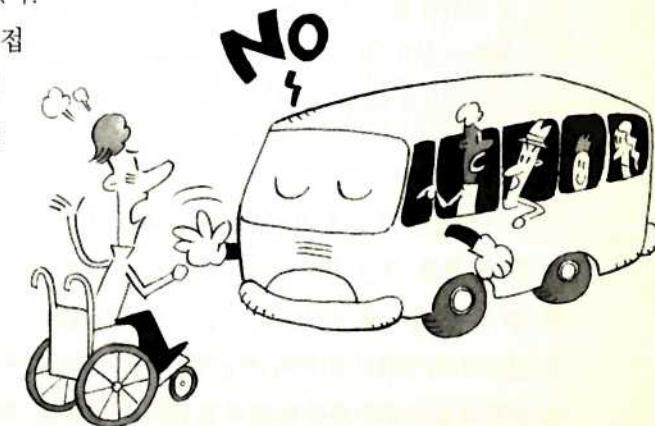
통수단인 버스로부터 승차를 거부당했다. 뉴욕의 버스는 리프트를 장착했지만 실제로는 휠체어 장애인이 전혀 이용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버스 기사들은 휠체어 장애인이 승차를 요구하면 키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고의적으로 장애인의 승차를 거부하고는 했다. 당시 데니스는 버스를 상대로 휠체어 리프트의 작동을 요구할 예정으로 버스의 승차를 요구했으나 역시 승차거부를 당했다. 그러나 데니스는 예전과 달리 승차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키를 가져올 동안 승강장에서 버스의 출발을 저지시키는 투쟁을 전개했다.

데니스의 투쟁과정에서 버스승객들의 불평이 제기되었으나 데니스는 다음과 같은 말로 승객들을 설득했다. “장애인의 권리는 매일같이 침해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은 이번 한번 뿐이다. 여러분은 불편하더라도 한번쯤 참여해야 한다.” 그의 항의투쟁은 일곱시간만에 교통국 직원이 휠체어리프트 키를 가져와 데니스를 승차시킴으로써 막을 내렸다. 그의 필사적인 행동으로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위의 사례들은 차량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접근권과 기본적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사안들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사례의 경우 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하는 시내버스에 대하여 평소의 불만을 폭발시킨 사건으로 본인의 의사를 반드시 그와 같은 물리적 방식으로 표시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다만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장애인을 특별히 배제시키려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이다. 이러한 사례는 대체로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사례이나 대응방식에 있어서는 보다 합리적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상습적인 탑승거부 행태를 보이거나 또는 고의성이 있는 행위일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버스회사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와 함께 관할 구청의 담당자에게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사례로서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집

근린 행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서 [편의 증진법]에 의하면,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적으로 주차한 경우(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 즉,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법 제27조 제2항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출입문 근처 등에 설치되며, 또한 공공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에는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담당기관 등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사진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렇지만 아직은 불법 주차에 관한 과태료 부과가 보편화되지 않고 지자체에 따라서 그 시행을 미루고 있는 경우에는 큰 효력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본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이나 장애인 단체 등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당사자, 장애인 관련단체, 편의시설단체, 신고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지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론화함으로써 편의시설 설치와 이의 준수를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다.

○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소송내 승소

뇌성마비 장애인인 이규석(31)씨는 지하철 혜화역에 설치되어 있는 휠체어 리프트에 전동스쿠터를 타고 몸을 실었다. 그런데 리프트가 중간쯤 내려가다가 갑자기 안전판이 젖혀지면서 이씨는 스쿠터와 함께 리프트에서 떨어져 계단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병원에 실려가 3주 진단을 받은 이씨는 사고 후 지하철 공사를 상대로 “공사가 편의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서 사고를 당했다”며, 피해를 보상해줄 것과 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하철공사는 “사고는 본인의 과실이 크며, 엘리베이터 설치는 비용이 많이 들고 장애인들의 이용이 적어 설치할 수 없다”며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이씨는 장애인 단체와 함께 공사 앞에서 몇 차례 시위를 벌인 후 작년 9월 지하철 공사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병원비와 정신적 피해보상비로 3천2백만원을 배상해줄 것과 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한 소송이었다. 이 사건은 그 동안 4~5차례 재판을 거쳐 올해 5월 최종 판결이 났다. 서울지법은 이날 “지하철 공사는 이씨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려 결과적으로 이씨 손을 들어주었다.(월간 함께 걸음 2000년 7월 호)

이 사례에서 보듯이 편의시설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물론 개인적인 차원의 대응도 가능하겠으나 관련단체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편의시설은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혼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지하철역에 설치된 리프트는 고장이 자주 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하철 공사측에 책임을 물은 것이며, 이에 대해 법원

이 공사측에 사고 책임 판결을 결정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는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없애고 엘리베이터 등으로 대체하는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결국 이 사례를 계기로 소송을 내 지하철 편의시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나아가 여론화시킨 것이 서울시로 하여금 편의시설 개선안을 내놓는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게 한 것이다.

3. 맷음말

장애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사회시스템에서 장애인은 사회활동에 불리한 조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는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이라는 이념이 실현된 사회이다. 따라서 이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환경조건을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접근권 행사와 관련하여 장애인이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될 때 우선적으로는 합법성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법, 편의증진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차별사례에 대해서는 신고토록하고, 장애인 단체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장애인의 총체적 삶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로 복귀되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추구한다. 오늘날 우리의 장애인복지는 일반 복지환경에 통합되지 않은 특수화된 경향을 갖고 있고 그 결과 사회통합이라는 기본이념이 실현되는데 저해의 소지마저 있다. 장애인복지가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지 못하고 사회와 분리된 서비스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 장애는 비통합적 역기능을 초래하는 비극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리적 장애의 제거와 공유공간 확보를 통한 생활환경의 개선은 장애인의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참여와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거리를 좁혀주고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을 달성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애인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회통합은 단순히 물질적 지원이나 정책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고 진정한 이웃으로서 유대관계를 통해 공동체 의식의 형성이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결국 사회통합이라는 목표에도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사회는 장애가 특별히 구분되지 않는 그리고 일반인과 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런 공동체적 사회일 것이다. 장애인의 통합은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조건에 의해 촉진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 이는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물리적으로 최적의 통

합형태를 취할 수 있으면서도 사회적 분리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시설 건물이 잘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나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면 통합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을 복지수혜자로서 자신의 권리와 욕구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받는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이제는 이들의 실생활에 있어 편견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사회환경이 전근대적 차원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과 연대를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는 결국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는 공간적 측면에서의 공동체 구현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은 물리적 측면에서는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무장애 공간이어야 하며, 더 이상 장애인이 특별한 대상으로 취급되지 않으면서 부담감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사회적 관계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고용현장에서의 차별

유동철(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1. 머리말

헌법 제 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가 주어져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노동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인 것이다. 우리 장애인에게도 노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노동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적 권리의 침해당하는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4조 2항에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승진,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장애인에 대한 노동시장 차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률상의 규정으로 볼 때 장애인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노동시장의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72조에는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근로 기준법, 직업안정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다’고 하여 노동법 일반의 기준이 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상의 권리구제 절차를 잘 알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서는 장애인의 노동권이 침해당한 사례들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2. 공무원 임용을 통해 본 장애인 고용차별

○ 법관임용 거부 사례

1982년 8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연수를 마친 4명의 장애인에 대해 대법원장이 법관의 임용을 거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이 사건이 여론화되고 여론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3일만에 4명을 전원 구제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장애인고용 1995년 여름호)

위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사회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하던 시절이었고 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해 줄 단체도 변변치 않았던 때였다. 그리고 법관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연관된 문제였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기 충분한 사건이었다. 따라서 언론을 통한 사회적 이슈화가 당시의 가장 적절한 대응 수단이었다.

언론은 장애인의 권리 옹호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 주체일 수는 없지만 강력한 영향력으로 인해 권리 옹호 운동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장애인신문, 장애인복지신문이나 중앙의 주요 일간지 뿐만 아니라 지방 일간지도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중앙이나 지방 일간지의 경우 장애인에 관한 기사를 많이 다루는 기자들의 명단을 확보해 두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이들을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이슈는 가능한 한 모든 기자들에게 동일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신문의 특정 기자에게만 정보를 줄 경우 다른 신문이나 기자들을 배척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언론 활용이 어려울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언론활용에는 장애인단체가 주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여야 한다. 장애인단체에서는 개별 장애인이 장애인단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언론과 개인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network)을 구축해 두어야 할 것이다.

○ 공무원 임용 거부 사례 1

부산시가 9급 전산직 장애인 지방공무원을 공채하면서 1차 시험에 합격한 장애인을 면접에서 탈락시킨 사건이 발생해 파란이 일고 있다. 뇌성마비 장애인인 이정우씨(33, 뇌성마비)가 지난 9월 부산시에서 시행한 9급 전산직 장애인공무원시험에 응시했다가 면접에서 탈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산지역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부산시의 탈락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장애인총연합회와 부산 경실련, 참여자치시민연합 등 장애인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들은 1일 부산시에 장애인 공무원시험 면접에서 탈락한 이씨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한데 이어 6일에는 20여명의 대표들이 부산시를 항의 방문해 이번 사건에 대한 부산시의 명확한 입장과 이씨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했다. 부산장애인총연합회의 이복남 사무국장은 「정보처리기사 1급 자격증까지 소지한 이씨가 직무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탈락한 것이라면 납득할 수가 없고 면접관이 얼마나 객관적인 평가를 하였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하며 부산시는 객관적인 면접기준과 평가자료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인력개발과장은 「이정우씨가 면접에서 탈락한 것은 직무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다고 평가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공무원 채용은 법령상 하자가 없고 면접은 면접권 고유권한이므로 한번 결정된 것은 번복할 수 없다」며 당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산장애인계와 이씨는 6일 밝힌 부산시의 입장이 최종입장이라고 판단하고 이번 사건의 해결을 위한 법적 대응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에 실시한 9급 전산직 장애인공무원 공채의 응시자격으로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로서 정보처리 기능사 2급 자격 이상을 가진 사람」으로만 응시대상자를 제한했다(1996년 11월 8일, 장애인복지신문).

○ 공무원 임용 거부 사례 2

1993년 8월 지방공무원 7급 행정직 채용시험에 공모한 ○○씨는 7급 행정직시험에서 한 명의 장애인도 선발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요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9급 행정직 공개채용인원 160명에 대하여만 4명의 장애인을 별도 구분선발하도록 하였을 뿐, 7급 행정직 시험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당시의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2항에 의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공개채용인원의 100분의 2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7급 행정직에도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였다면 ○○씨는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으므로, 이와 같이 위법하게 실시된 시험에 의한 이 사건 불합격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무원의 채용이나 인사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당한 장애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도 있으며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위 두 가지 사례 모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사례1은 원고폐소 판결이 났지만 사례2는 원고 1심승소 판결을 끌어내었다. 사례2를 관할한 대전고등법원은 장애인에게 부적합한 직무분야나 직종 직급 등은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4조 3항, 시행령 제32조에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난 시험실시의 재량이 지방자치단체에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보았을 때 공무원의 채용과정에서 불합격처리된 장애인은 먼저 자신이 응시한 직종과 직급에 몇 명의 장애인이 채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2% 이상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의무규정

화하였으며, 장애인 공무원 수가 1만명이 될 때까지 5% 이상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장애인 채용 인원수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인원에 미달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법정 인원수에 미달할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승소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단체에 연락하여 법적인 도움을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례1과 같이 면접과정에서 불합격처분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통해 노동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3. 고용현장에서의 장애인 부당해고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10여개월을 일하던 직장에서 무단해고당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11월부터 인천시 북구 효성동 서통산업 기관실에 다니던 김중교(49, 청각장애6급, 인천시 남구 만수1동)씨는 지난 8월 20일 회사측으로부터 사람이 바뀌었으니 그만두라는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아야 했다.

김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해 볼 겨를도 없이 그렇게 해고됐고 8월분 월급은 물론 해고수당도 못받은채 물러났다. 함께 일하던 동료 80여명은 모두 월급과 추석상여금을 타갔던데 비해 무단 해고후에 찾아온 추석은 김씨에게 전혀 달갑지 않았다고. 장애로 인한 불이익이라는 김씨의 이야기는 뒤늦게나마 세상에 알려진 것은 바로 김씨 자신에 의해서이다. “너무 억울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그는 추석직후 자신의 부당한 해고를 알리는 편지를 6대 일간지에 띠었다. 동아일보(9월 17일자), 세계일보(9월 19일자), 한겨례신문(9월 26일자)에 그의 글이 실리자 회사측에서 연락이 왔다.

회사의 인사책임자라는 사람은 그를 만나 “윗사람 지시에 의해서 그랬다. 미안하다.”며 합의불 것을 논의했고 그도 한달치 월급과 해고수당만을 받고 물러났다.

이렇듯 다소 굴욕스러운(?) 거래가 성립하게 된 이유는 물론 ‘장애’가 그 원인이었다고 그는 진단했다. 인천기계공고를 졸업한 그는 강원도 삼척군 황지읍 탄광촌에서 폭약발파공으로 일하며 20여년의 짧은 시절을 보내고 청각장애를 얻었다. 정작 그가 생활의 어려움을 느낀 것은 탄광촌을 나와 청각장애 3급의 부인 방순덕(47세)씨와 먹고 살아가야 할 문제에 부딪치면서부터 였다고. 장애를 입은 후 따 두었던 공인중개사, 열관리사자격증으로 다시 취업하기는 나이와 자신의 장애가 걸림돌이라는 그는 지난 1일부터 대우자동차 하청업체에서

전선 끊는 일을 하고 있으며 부인 방씨는 제일제당에서 임시포장일을 하고 있다.

김씨는 “계열회사를 갖고 있는 그룹회사에서 장애인을 해고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일하고 싶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일하는 장애인은 부당해고 당하지 않도록 장애인고용촉진법은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한 관계자는 “서통산업의 경우 3백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업체이기는 하나 공단에 등록돼 있지 않아 개입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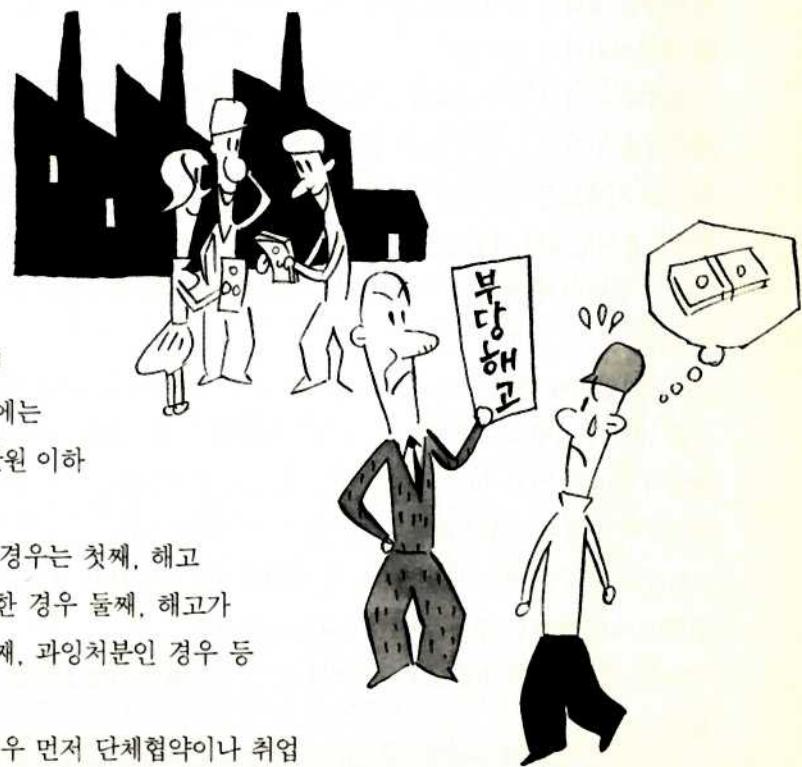
또한 노동부 장애인고용과는 지난 1일 지방노동관서에 사실조사를 하라고 시달했다
(1992년 10월 9일 장애인복지신문)

민간 기업체로부터 장애인이 불이익을 입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주가 장애인 노동자를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하면 장애인은 노동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으며,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되면 기업주는 노동관계법상의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근로기준법 제30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다.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첫째, 해고를 위한 정당한 절차를 위배한 경우 둘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셋째, 과잉처분인 경우 등이다.

따라서 해고통지를 받는 경우 먼저 단체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해고절차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는 무효이나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는 유효하다. 절차규정에는 징계위원회의 구성, 해고사유의 사전 통지, 징계위원회에 본인의 출석과 충분한 소명기회의 부여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위배한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이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33조 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또는 근로자 지위확인 및 해고기간중의 임금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법원에 의한 구제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의 활용이 효과적이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가 1차적으로 판정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게 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게 된다. 행정소송의 1심은 1998년 3월에 신설된 행정법원에서 담당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신청기간의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지방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는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과 법원에 대한 소송제기는 서로 배타적인 절차가 아니므로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도 무방하며,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정이 법률상의 관계를 변화시키지는 않으므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면에 민사소송에서 기각되면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되게 된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노동위원회의 구제결정을 사용자가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별칙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완벽한 구제절차는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절차의 편의상 노동위원회에 먼저 제소하고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고용현장에서의 장애인 임금착취 및 구타

○ 임금착취 및 구타 사례

한 정신지체 장애인이 10년 동안 근무해 오던 가내수공업 공장에서 임금착취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시 강동구 용납동의 모자를 만드는 가내수공업 공장에서 10여년 동안 봉제 일을 해온 정신지체인 강귀남(30)씨는 고용주의 잊은 구타를 견디지 못해 지난해 8월 공장을 도망쳐 나왔다.

강씨에 따르면 자신을 고용한 김용주씨가 오전 8시부터 밤 10까지 일을 시켰지만 임금은 주지 않아 용돈으로 몇천원씩만 받아왔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가 3년전부터 임금대신 강씨 명의로 3년 만기 5백만원짜리 적금을 매월 10만원씩 붓고 있다가 지난해 8월 잊은 구타로 강씨가 그곳을 나가자 적금 만기일이 지난해 12월 적금을 찾고서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능이 77로 경도정신지체인 강씨는 현재는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거택 보호자로만 등록되어 현 주거지인 고덕동 사무소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다.

강씨를 고용했던 김씨측은 “귀남이는 고향사람의 아들로 일은 하지 않고 말썽만 피워 마음 잡고 일하라는 뜻에서 적금을 부어주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지능이 떨어져 돈을 쓸 줄도 모르는 아이에게 돈을 줄 수는 없고 귀남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되는 대로 아버지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씨는 “내가 지능이 모자라는 장애인이어서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김씨측에서는 구타를 하면서 나가라는 말을 자주했다”며 “지병인 축농증과 불면증에 시달렸는데도 김씨측은 잠이 안오면 일이나 더하라며 약값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씨를 보호하고 있는 한국복지재단 서울지부 후원회 김미영 부회장은 “강씨가 이곳에 처음 왔을때는 구타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며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고 말하며 “10년동안 일을 했는데 임금은 주지 않고 구타를 일삼은 것은 엄연한 인권유린이며 강씨 명의의 적금을 본인이 아닌 제 3자에게 인출해준 용납동 새마을금고측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납동 새마을 금고측은 (김용주씨는 평소 마을금고와 잘 아는 사이이고 강씨는 지능이 모자라는 사람이라 김씨에게 적금을 인출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위의 이같은 주장과는 달리 강씨는 이곳에 오기전 용납동에서 장애인 문학지와

장애인관련 신문을 구독하는 등 의사 표현이 정확하고 기억력과 언어력이 다른 사람에 그다
지 뒤지지 않는다.

강씨를 보호하고 있는 김미영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 내무부에 민원을 제출한 상태
이나 강씨가 김씨측의 처벌은 원하지 않고 적금을 돌려주기만을 바라고 있어 고소는 검토중
이다”라며 “그러나 강씨가 30세를 넘은 성인인데 본인 의사에 따르지 않고 돈을 연락도 되지
않는 아버지에게 돌려주겠다는 김씨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강씨는 시골서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을 마치고 10년전 서울에 올라와 김씨집에서 일
해 왔으며 그동안 김씨 가족의 잊은 구타로 자주 김씨의 집을 나왔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어
김씨의 집에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1997년 4월 18일 장애인복지신문).

(1) 고용현장에서의 구타

근로기준법 제 7조는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
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
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근로기준법 제110
조). 여기서 폭행이란 근로자에 대한 물리
적인 폭력과 같은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숙소에 들어가 금품절취 적발 등
을 이유로 몸수색을 하는 것도 폭행이 된다. 폭
행을 한 자가 사업주를 대리하는 대리인 사용
인 기타 종업원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위의 벌칙이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116
조).

따라서 구타를 당한 장애인은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구타행위를 고소할 수
있으며, 배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2) 고용현장에서의 임금착취

근로기준법 제42조 1항은 임금은 통
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조 2항에는 임금을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친권자인 부모 기타 법정대리인에게는
임금수령권한이 없다(근로기준법 제66조). 따라서 이 사례 경우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가
된다.

5. 맷음말

위 사례들에 의해 볼 때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장 먼저 법적인 합법성을 따져보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다. 그러나 노동관계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이 합법성을 따지거나 소송을 제기하기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가장 먼저 장애인단체에 문의를 하고 법적인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단체에서는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연결망을 항상 구축하고 있어야 하며, 이와 함께 언론에 대한 네트워크 구
축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로서의 장애인의 권리

- 장애인 보험가입차별사례를 중심으로

조문순(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팀장)

I. 들어가며

소비자로서의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서 논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 사회가 아직 장애인을 단지 '수혜적' 혹은 '시혜적' 급부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비장애인과 동일한 소비자로서 파악되는 인식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회구성원이 시장경제원칙하에서 일정 대가를 지불하고 재화를 구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도 소비자가 된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것이 유형의 재화이든, 무형의 서비스 이든 혹은 사회복지서비스이든 예외는 존재할 수 없다. 또한 그 구매의 자금을 국가가 지불하든, 장애인 개인이 지불하든 역시 엄연한 구매행위이고, 소비행위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어떠한 형태이든 소비행위에서 비롯되는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가 전제된다.

더욱이 사회 전체 구성원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장애인들의 생활의 질 역시 향상되어가고 있다. 다양하고 질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앞으로도 이 욕구는 점점 더 증대될 것이다.

하지만 사회는 아직 이러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다. 사실 여전히 장애인의 인권이 단지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유린되어지고, 장애라는 이유때문에 차별이 관행화되어지는 현실에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부르짖는 것이 공허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수혜급부자'로만 낙인되어 오는 장애인의 현재의 위상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위상으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생각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 목소리를 지난 한 해 동안 '보험가입차별제거 운동'으로 전개해 왔다.

하지만 보험가입에서 장애인의 차별이 완전히 철폐되었는지는 확답할 수 없다. 일부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지금 이 시점까지도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이제까지 전개해온 과정까지만을 기술하기로 한다.

II. 본론

1. 금융권에서의 장애인 차별

소비자로서의 장애인 차별은 많은 영역에서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까운 예를 들자면 지하철 승차를 위해 무료승차권 교부시 역무원의 불친절 행위가 비일비재하며, 사회복지서비스 현장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 역시 소비자의 권리를 찾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영역이외에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곳이 바로 금융권에서의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한 시각장애인은 신용금고에 융자를 받으려 갔다가 담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정치산자'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신용금고 직원의 얘기를 전해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에 항의하자 신용금고측은 "내규상 장애인은 한정치산자로 대출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이후 장애인단체가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자 신용금고측은 "그 직원이 뭔가를 잘못 알고 그런 것이다."라고 말을 변복하고 나섰다.

결국 이 문제는 신용금고측의 정식 사과로 마무리졌지만 단지 이러한 사례들이 한 신용금고측에 국한되어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금융권에서의 장애인의 차별은 아주 오래전부터 관행화 되어왔다. '돈'과 관련되어 있는 사적영역이라 국가 공권력도 미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각자의 엄격한 내부지침 등을 구비하고 있기에 장애인이 신용등급상으로 어떤 등급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 밖에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금융권의 태도를 밖에서도 쉽게 알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보험'이었다. '보험'은 흔히 잠재되어있는 위험을 보장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게 된다. 장애인들도 역시 보험 가입을 통해 암이나 질병 기타 사고로부터 위험을 보장받거나 소득을 보장받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 연금보험같은 것을 가입하고 하는 욕구가 늘고 있다.

하지만 보험가입을 하고자 하여 청약서(보험가입을 하고싶다는 소비자의 요청)를 내밀어보지만 이후 들려오는 소리는 모두 "장애 때문에 위험이 많아 안되겠네요"라는 똑같은 말뿐이었다.

그리고는 "왜 안돼냐?"는 항의에 똑같이 "내부 규정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한다.

이러한 사례들이 아주 오랫동안 반복되어왔다. 그래서 오히려 장애인들사이에서는 "에이, 그거 해봤자야, 장애때문에 안돼"라는 식으로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왔다.

하지만 지난 1999년부터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의 소비자권리 찾기의 일환으로 금

용권, 특히 보험을 통한 차별문제를 하나씩 짚어나가기 시작했다.

2. 사보험에서의 장애인 위상찾기

1-1. 장애인 보험차별사례 접수받기

보험사가 소비자로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관행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된 이후로 연구소는 장애인 보험차별사례를 1999년 초부터 접수받기 시작했다. 접수는 전화상담으로 통해 받기 시작하였으며, 각 장애관련 신문사 등을 통해 '보험가입차별 사례를 받습니다'라는 광고를 통해 시작되었다.

보험은 크게 계약 - 유지 - 보험금지급이라는 세 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장애인들의 보험차별 사례 역시 이러한 세 단계의 구조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연구소는 개인 보험차별사례를 받는 동시에 장애인단체보험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1999년 6월부터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보험가입현황을 조사하였다.

(1) 보험가입상의 차별

□ 사례 1

J씨는 사고로 지체 장애2급 판정을 받은 중도 장애인이다. 17년 동안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가전제품 관련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자영업을 하면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번번이 모든 보험 회사가 장애를 이유로 가입을 거절 당해왔다. 결국 J씨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할 수 없어 부인을 피보험자로 한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말았다.

□ 사례 2.

K씨는 지체 장애2급으로 부인의 권유로 96년도에 S사의 암보험을 가입하였다. 가입 당시 장애인라는 이유로 자회사가 원하는 장애등급을 판정 받아야 한다며 삼성동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되었다. 장애인수첩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신체 검사와 소변검사 등을 받았으며 검사를 마치고 나서 6급이라는 등급에 의해 일반인들보다 보험료도 다소 비싸게 책정이 되었으며, 암보험에 걸들여지는 각종 옵션 등을 배제된 상태로 보험가입을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을 일체 받지 못했다.

이상에서의 차별사례를 통해 알아본 결과 보험가입절차를 장애인에 대한 보험사의 차별 행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가. 동종의 위험 이상을 가진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보험 가입은 거절되고 있다.

- 보험이란 同種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일정 보험료를 내고 위험을 담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동종의 위험 이상을 가진 사람들은 보험의 피보험자(보험의 목적이 되는 사람)로서의 자격을 거절당할 수 있다.
- 대부분의 보험사측은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이유로 장애인 이 이러한 동종의 위험 이상을 갖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나. 장애인 보험 가입을 일반인에 비해 높은 보험료, 신체검사, 그리고 선택 계약사항의 배제 등을 조건으로 제시한다.

- 보험사측이 제시하는 장애등급과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과의 차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일반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생략된 절차로 이루어지는 신체검사를 받게 되며, 이 신체검사는 보험회사의 고객으로서 배려받기보다는 사회의 장애에 대한 벽을 느끼게 하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이러한 신체검사 이후 정해지는 장애등급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인에 비해 높은 보험료를 책정 받는 경우도 있으며, 각종 선택계약사항인 질병입원특약 등이 배제되는 경우들이 흔히 존재하지만 그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과 근거제시 등이 수반되지 않고 있다.

(2) 보험계약 유지상에서의 위상

□ 사례 1.

L 씨의 아이는 생후 7개월의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완전한 치료를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하였다. 그후 L 씨는 아이의 명의로 97년 6월에 D 생명 S 상품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보험료를 11회 납입한 후인 생후 1년이 되었을 때 아이가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진단되었다. 퇴원당시 병원 측에서는 장애에 대한 주의할 사항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기에 장애 진단을 받고 나서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D 회사로부터 강제해지를 당하였다. 이후 L 씨는 S 사에도 보험가입을 청약하였으나 거절당했다.



□ 사례2.

임신중의 산모 M 씨는 94년 S사의 종합교육보험에 가입하였다. 95년 아이 출산후 인큐베이터에 2~3일 후에 퇴원하였으나 생후 6~7개월 이후 아이가 소리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음을 알게되고 청각장애 진단을 받았다. 장애 발생시 혜택이 담보되어 있었기에 보험사측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보험사측은 선천적인 질환에 의하기에 보상할 수 없다고 하며 중도해지하였다.

가. 보험가입이후 장애 판정을 받자 장애를 이유로 중도해지를 당할 수도 있다.

- 보험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오히려 장애를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강제해지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다.
- 이러한 경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보험에 대한 일반 상식이 결여되어 있기에 그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하지 못하고 보험사측의 강제해지에 무력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흔히 존재한다.

나. 보험사측은 가입이후 발견된 장애에 대해 선천적 질병 혹은 가입자의 고의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강제해지를 요구하기도 한다.

- 중도 강제해지의 이유로는 가입이후 발견된 장애에 대해 선천적 질병 혹은 기입자가 고의로 장애를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보험사측의 이유에 대해 가입자들은 법적 소송 등의 적극적인 해결책보다는 중도해지금 혹은 납입한 보험금이라도 환급받는 소극적 대처방안으로만 대처하고 있다.

(3) 보험 보상에 있어서의 위상

□ 사례1.

정신지체로 특수 학교에 재학중인 L 군은 하교길에 자전거를 몰고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화물차에 치어 사망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해당 보험회사는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 군이 장애인임을 이유로 보상액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여, L 군의 부모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같은 사전 통보와는 다르게 실제 보상을 함에 있어서 보험회사는 L 군이 장애인임을 이유로 과실에 대한 책임 개연성을 70% 적용하였으며 L 군이 1급 장애인 이기에 향후 노동력이 전무하다는 이유를 들어 도시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의 1/3로 산정하여 장례비와 위로금 등을 모두 합쳐 16,000,000원 정도를 보상액으로 제시하였다. 이 사례는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다.

□ 사례 2

맹학교에 재학중인 시각장애인 1급인 B 군은 학교운동장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 중이던 학교 소유의 버스에 치어 사망하게 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보험회사측은 운전자의 과실을 90% 인정하고 그 외의 10%를 피해자의 과실로 잡고 사망 당시 이 피해자가 9살이며 학생인 점 등을 이유로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였고, 시각 장애 1급이므로 향후 노동능력을 일반인의 15%를 산정하여 위자료 및 보상금을 약 3200여만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B군의 부모는 노동능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고등법원에서 조차 기각을 당하였다.

가. 장애를 이유로 피해보상에 있어 일반인에 비해 과실은 높게, 보상금은 턱없이 낮게 인정된다.

- 교통사고 등과 같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장애인일 때 과실상계부분에 있어 과학적 근거나 증거 없이 일반인에 비해 장애인들의 과실을 높게 책정되고 있다.
- 또한 보상에 있어서 소득산정상 장애를 이유로 근로능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근로가동능력을 턱없이 낮게 책정하고 있다.

(4) 장애인단체의 보험가입상의 차별

장애인의 흔히 이용하고 있는 학교, 조기교실, 통합유치원, 주간보호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보호작업장, 단종복지관 등 총 서울시내 40개 이용시설 및 단체를 대상으로 보험가입현황을 조사해보았다. 지면상 상세 내용은 생략하고, 총체적인 문제점만 지적해본다.

가. 장애 관련 단체나 시설의 경우 장애인관련 시설이라는 이유 때문에 보험 가입 불가

- 실제적으로 장애관련 시설의 경우에도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구비하고 싶어하나 대규모 종합복지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 가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문제로 장애 관련 시설 등은 야외 학습이나 견학 등에 있어 위험 담보 문제를 장

애인임을 고지하기 않고 편법으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 그러나 장애인관련시설이나 단체들의 사고율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없으며, 오히려 조사 대상 기관중 사고가 있어 보상을 받았다고 응답한 시설은 1-2개 시설이었다.
- 이는 장애인 시설이나 단체들의 일반 직종의 종사자에 비해 오히려 주위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보험에서 갖는 사고 위험에 대한 선입견보다 사고율이 적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2. 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 보험차별검토

이렇게 모아진 사례들을 토대로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복지위원회에 이 사례들을 검토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차별 행태를 보이고 있는 보험사에게 차별의 근원이 되고 있는 내부지침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각 보험회사는 내규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제시하기를 기피하였고, 결국 여러 경로를 통해 각 보험회사의 단편적인 내규지침 등을 습득할 수 있었다.

검토결과 이 인수 지침의 시발점이 한 지점에서 시작하므로 국내의 보험회사들은 거의 동일한 인수 지침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장애인 보험 인수 지침을 각 보험회사별로 검토해보기보다는 가장 인지도가 높은 보험회사의 인수지침을 예시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본 지침상 등급은 장애인복지법상의 등급과 무관함)

■ 언어장애

항	장애 내용	가입 한도	건강 진단	질병 입원특약	재해 입원특약
1급 10	병어리, 농아	1억	유진단	불가	불가

■ 청각장애

항	장애 내용	가입 한도	건강 진단	질병 입원특약	재해 입원특약
2급 6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억	유진단	불가	불가
4급 14	한 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억	유진단	불가	불가
5급 11	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억	유진단	3천만	3천만
5급 12	한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억	유진단	3천만	3천만

■ 시각 장애인 지침

항	장애 내용	가입 한도	건강 진단	질병 입원특약	재해 입원특약
1급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억	유진단	불가	불가
3급 1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1억	유진단	불가	불가
4급 1	두 눈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1억	유진단	불가	불가
6급 1	한 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5억	유진단	3천만	3천만

■ 지체 장애 인수지침

장애1급

항	장애 내용	가입 한도	건강 진단	질병 입원특약	재해 입원특약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불가	-	-	-
3	중추신경계 또는 장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불가	-	-	-
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억	유진단	불가	불가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억	유진단	불가	불가
7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억	고지서	불가	불가
8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억	유진단	불가	불가
9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억	유진단	불가	불가

장애2급

항	장애 내용	가입 한도	건강 진단	질병 입원특약	재해 입원특약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불가	-	-	-
3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억	유진단	불가	불가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억	유진단	불가	불가
5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 3급의 2내지 7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3급의 2내지 7 중 또는 제 4급의 5내지 11중에서 신체 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1억	유진단	불가	불가

장애3급

항	장애 내용	가입 한도	건강 진단	질병 입원특약	재해 입원특약
2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1억	고지서	불가	불가
3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 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때	1억	유진단	불가	불가
4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억	고지서	불가	불가
5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억	유진단	불가	불가
6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1억	고지서	불가	불가
7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1억	고지서	불가	불가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1억	고지서	불가	불가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불가	-	-	-

10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 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1억	유진단	불가	불가
11	곱추(앞뒤 곱추는 제외)	3천만	유진단	불가	불가

장애4급

항	장애 내용	가입 한도	건강 진단	질병 입원특약	재해 입원특약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불가	-	-	-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불가	-	-	-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억	유진단	불가	불가
6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억	유진단	불가	불가
7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2억	유진단	불가	불가
8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2억	고지서	불가	불가
9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2억	고지서	불가	불가
10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억	고지서	불가	불가
11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억	고지서	불가	불가
12	10발가락은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억	유진단	불가	불가
13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2억	고지서	불가	불가
15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불가	-	-	-

장애5급

항	장애 내용	가입 한도	건강 진단	질병 입원특약	재해 입원특약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억	유진단	3천만	3천만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억	유진단	3천만	3천만
4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2억	고지서	3천만	3천만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2억	고지서	3천만	3천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2억	고지서	3천만	3천만
7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억	고지서	3천만	3천만

장애6급

항	장애 내용	가입 한도	건강 진단	질병 입원특약	재해 입원특약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5억	유진단	3천만	3천만
3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5억	유진단	3천만	3천만
4	한 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5cm미만 단축되었을 때	5억	유진단	3천만	3천만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억	고지서	3천만	3천만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억	고지서	3천만	3천만
7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억	고지서	3천만	3천만

8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5억	고지서	3천만	3천만
9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5억	고지서	3천만	3천만
10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억	고지서	3천만	3천만

1-3. 인수지침상의 공통적인 문제점

이와 같은 지침을 놓고 연구소 복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문제점을 발견했다.

(1) 가입한도 금액 제한

- 최근 장애인 보험가입에 있어 일정부분 기준을 완화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장애등급별로 가입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 위험률에 대한 정당한 근거없이 가입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 전체가 도덕적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는 편견에서 기인한다.

(2) 질병과 무관한 단순한 절단장애나 언어·청각 장애인들의 질병입원특약 등의 옵션계약 배제

- 신체 장애인의 장애의 원인이 단순히 절단장애이거나 질병과 무관한 청각, 시각 장애인들의 경우 질병특약 계약을 원칙적으로 가입 제한하는 것은 근거 없는 선입견이다.

(3) 지침상의 장애인에 대한 비하적인 언어 사용

-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언어가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보험영역에서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비하적인 언어를 지침상에 사용하고 있다.

1-4. 법적 대응책 마련

이렇게 모아진 사례와 보험가입인수지침의 문제점 등을 놓고 향후 적극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우선 접수된 사례가 타당한 것인지, 어떤 대응이 가능한 것인지를 전문가에게 문의하였다.

전문가 문의는 우선적으로 보험전문가에게 이루어졌다. 보험전문가에게 접수된 사례 전부 제

출하였고, 타당성을 검토의뢰하였다.

전문가는 대응방안을 두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첫째로 현재의 금융감독원에 보험분쟁을 해결해 주는 곳에 제소하는 방안과 두 번째로 법률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었다. 그러나 첫 번째의 보험분쟁위원회에 제소하기에는 증거자료 등의 미약, 시일의 경과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며 법률 소송을 위해 두 번째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들었다.

법률전문가는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인해 사실 보험관계 소송이 쉽지 않음을 알려주었으며, 가능한 법률소송으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검토하게 되었다.

이에 연구소는 기존 사례보다는 새로운 사례를 발굴하여 차근차근 증거를 확보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소송을 위한 '원고인단' 구성을 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소송 원고인단은 가능한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중증장애인들 중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장애인, 그리고 보험가입을 거절당했을 때 법률적 소송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뜻밖의 사태가 발생하여 보험차별은 새로운 전기를 갖게 되었다.

1-5. 언론을 통한 여론 확산

소송원고인단을 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뜻밖의 전기를 갖게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2000년 4월경 한 청각장애인의 보험가입거부사태였다.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특수교사인 한 청각장애인이 직장인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가입을 단지 청각장애라는 이유만으로 거절 받은 것이었다. 이 사례는 사실 청각장애인 당사자보다 부인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함으로 해서 사건이 확대되었다.

부인 이씨는 이 불합리한 차별을 해당 보험회사는 물론 각 보험회사에 문의해보는 등 적극적으로 대항하였으며, 각 언론사에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민원접수를 하였는데 이 과정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이씨는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에 연락을 해왔고, 마침 연구소에서 이 사안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에 반가움을 표시하였다.

더욱 이 사안이 호재로 작용한 것은 그 시기가 '장애인의 날' 이었다는 점이었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일간지 기자들이 장애인 관련 기사를 찾고 있었는데, 이 사례가 기자들에게 좋은 기사제보가 되었던 것이다.

장애인의 날 각 언론지 기자들은 직접 방문과 전화를 통해 기사를 제보받았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 보험차별사례는 이 문제를 확산시키기에 충분했다.

이에 장애인의 날을 호재로 전국적으로 장애인보험차별이 언론과 TV를 통해 전파로 확산되었으며, 이는 이 사안이 장애인 차별에 대한 여론의 힘을 받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1-6. 사보험영역에서 장애인의 제자리 찾기

이 사안이 언론으로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해당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정식으로 사과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해왔다. 또한 그동안 응답이 없던 금융감독원에서까지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답변이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장애인 보험차별을 두 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일반보험가입기준의 완화이며 두 번째는 장애인전용보험이라는 상품의 개발이었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일반보험의 가입개선안에는 앞서 언급된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총71개 장해항목 중 신체장해상태에 해당하는 57개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며, 장애의 원인이 재해였으나 다른 질병이 있는 경우에만 질병상태에 따라서만 가입조건을 판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상법상 계약 무효에 해당하는 장애인이거나 위험측정이 불가능한 장애인에 한하여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법상 계약 무효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정신질환장애인이나 정신지체인을 의미하며 이는 '상대적으로 사고의 위험이 높기때문'이라고 제외하는 이유를 밝혔다.

또한 위험측정이 불가능한 장애인이라 함은 씹어먹는 기능에 장해를 가진 흉·복부 장기,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 영구히 회복이 불가능한 장애인, 척추에 기형 또는 운동장해를 남긴 장애인을 의미한다.

이로써 사보험의 장애인의 제자리 찾기는 1년 6개월만에 소극의 성과를 마련하였다. 이제 장애인들은 2000년 10월부터 위에 제시한 장애를 안은 장애인들을 제외하고는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일반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사실상 홍보기간이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비장애인과 동등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부여받게 된 것이다.

장해등급분류표상 보험가입인수 개선사항 비교표(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와는 무관함)

등급	신체장애	현행	개선
제1급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제한	정상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불가	불가
	중추신경계 또는 장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불가	불가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불가	불가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제한	정상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증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불가	불가
제2급	증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불가	불가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불가	불가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 3급의 2 내지 7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3급의 2내지 7중 또는 제 4급의 5내지 11중에서 신체 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제한	정상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제한	정상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제한	정상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제한	정상
	증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불가	불가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으나,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불가	불가
제4급	증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한	정상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불가	불가
	증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불가	불가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으나,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불가	불가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제한	정상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제한	정상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 중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제한	정상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제5급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10발가락은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등급	신체장애	현행	개선
제1급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 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제한	정상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제한	정상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제한	정상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제한	정상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외)	불가	불가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 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제한	정상
	두 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한	정상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불가	불가
제2급	증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불가	불가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으나,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불가	불가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제한	정상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제한	정상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 중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제한	정상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10발가락은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제3급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10발가락은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등급	신체장애	현행	개선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제한	정상
	한 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한	정상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외)	불가	제한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불가	제한
제5급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제한	정상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한	정상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한	정상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제한	정상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제한	정상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제한	정상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제한	정상
	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한	정상
	한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제한	정상
	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한	정상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골출증은 제외)	제한	제한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제한	정상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불가	제한

등급	신체장애	현행	개선
제6급	한 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한	정상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한	정상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한	정상
	한 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5cm미만 단축되었을 때	제한	정상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제한	정상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제한	정상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한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	제한	정상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제한	정상
	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았을 때	제한	정상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불가	제한

* 제한의 경우 회사별 담보위험별로 가입금액 ~~한도~~가 상이한 경우이며 입원의 경우 대부분 가입불가

* 질병보유 장애인의 경우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가입금액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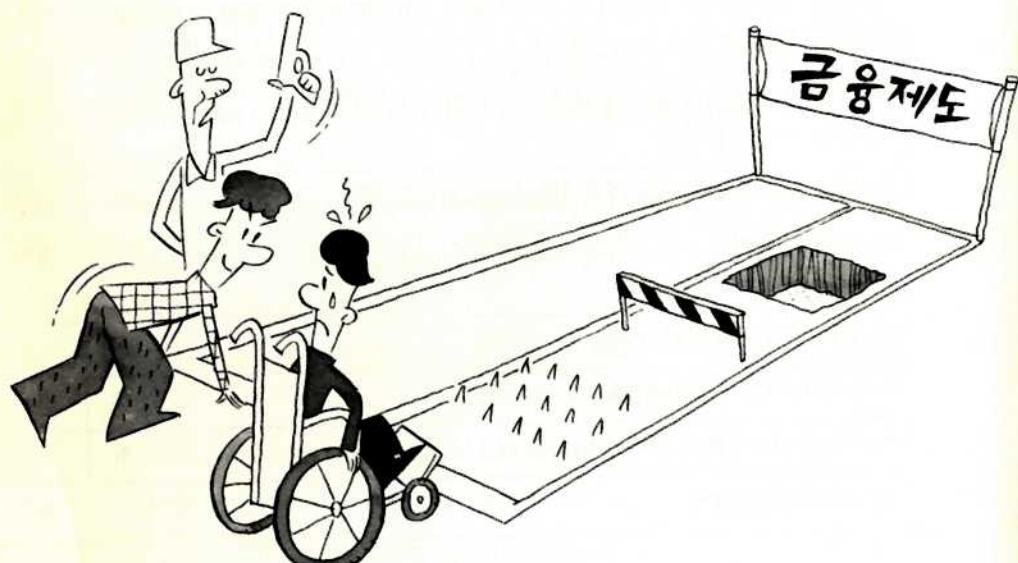
III. 마무리하며 - 남아있는 문제

장애인 보험차별사례는 작은 성과이지만 나름대로 성과를 보았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숙제가 있다. 보험차별에 있어 가입상의 차별과 유지상의 차별은 어느 정도 기준의 완화로 해결될 수 있지만 보상에 있어서의 차별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숙제라고 할 수 있다.

보상에서의 차별은 장애인의 노동상실률과 관련하여 생산능력에 중점을 둔 자본주의사회에 장애인의 위상과 직결되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상실률의 정확한 데이터, 이에 근거한 축적된 통계가 나와주지 않으면 보험에 가입한다하더라도 보상에 있어 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장애인계가 긴시간에 걸쳐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겨둘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폭력으로부터의 장애인 인권유린

조창영(장애우인권센터 원장, 변호사)

I. 서론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누구든지 부당하게 자신의 신체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아닌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보전하는 것은 모든 인권의 기본이라 하겠다.

최근 언론을 통하여 정신지체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나 가정내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폭행사건 등 장애인과 관련된 폭행사건을 자주 접하게 된다.

장애인에 대한 폭행유형과 이에 대한 법적 대처방안을 살펴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도 신체적 거동의 불편, 정신적 능력의 미약 등으로 인하여 폭행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그 폐해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한 정신지체 장애 여성이 동네주민으로부터 집단적이고 반복적인 성폭행을 당한 사례를 접하였을 때 과연 그 피해 여성의 장애 여성이 아니었다면 집단적이고 반복적인 폭행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리고 이러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외에도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를 비하하는 언어폭력은 그동안 또 얼마나 많았었는가?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폭력의 유형과 그 법적 대처방안을 정리해보는 것도 장애인을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는 생각이든다.

다만 한정된 지면 관계로 장애인에 대한 폭력문제중 최근에 언론에서 문제시되었던 정신지체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내에서의 장애인 폭력 문제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 소개와 적용법령 및 처리방안 등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II. 정신지체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

본래 성폭력은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나 정신지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즉 성폭행범들은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이 미약하여 저항하기 힘들거나 쉽게 위계(危計) 등의 방법으로 성폭행에 끌어들일 수 있는 정신지체 여성이나 저연령의 미성년자를 1차적 범죄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성폭행의 피해자가 정신지체 여성인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성폭행이 집단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다.

2000년 1월 언론에 의해 보도된 바 있는 강릉의 김양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는 정신지체 여성에 대한 성폭행의 전형적인 실례를 찾을 수 있었다. 위 사건은 비록 김양 개인에게 가혹한 사건이었다고 보다는 이땅의 대부분의 정신지체 여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 하겠다.

(1) 성폭력의 현황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의 '여성 장애인 전국실태조사(1997)'에 의하면 15.9%의 여성장애인 이 성적인 수치를 느낄 정도로 성희롱, 성추행, 강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폭력의 비율이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정신지체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그 다음이 지체장애, 언어, 청각장애, 시각장애의 순서로 되어 있다.

그만큼 정신지체 여성의 경우에는 다른 장애 여성보다도 쉽게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그리고 성폭력은 모르는 사람에 의한 경우보다 아는 사람에 의하여 가해 되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시설내에서의 성폭력도 시설의 장이나 시설의 관리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해방법으로는 과자나 돈으로 유인하는 경우나 친분관계 이용 혼인빙자 강간, 구타



폭력등 강제력 행사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정신지체 여성에 대한 성폭행에 있어서는 1인의 가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는 여성에게 성폭력을 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으며 발생 빈도도 1인이 2회이상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가해자는 먹을 것 등 보상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경우와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해자 자신이 성폭력이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행위라는데 대한 인식이 거의 없으며 피해자 중 정신지체 여성의 경우에는 피해를 당하고도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 성폭력의 특성

1)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은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에서 드러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평소 잘 알고 있는 주변사람에 의해 피해당사자의 집이나 가해자의 집 동네근처 등 생활근거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2)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은 드러난 사례의 피해유형을 볼 때 대부분 강간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3)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 가벼운 성폭력은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또한 시설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성폭력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설의 폐쇄적 구조와 열악한 환경 속에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

4) 협박이나 폭력이 동반된 경우도 있지만 애정을 위장하거나 친분관계를 통해 유인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는 중증장애인인 평소에 사람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생활을 하다가 조그만 관심표현에도 마음을 열고 의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이것 때문에 피해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며 오히려 가해자는 이를 이용하여 성적유리를 계속하기도 한다.

5) 주변사람들이 피해자임을 인지하여 조치를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한다. 그에 반해 지원체계는 현실적으로 빈약하다. 장애에 대한 외부 노출을 꺼리며 장애인의 심리적 상태를 살피는데 소홀하고 법적 고소, 가해자 처벌, 금전적 보상 등 사건해결 중심적으로 대처할 때 피

해자는 소외되곤 한다. 피해보상을 받고도 피해자의 치료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도 있으며 의료적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6)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엄충처벌이 가능하지만 장애로 인해 사건정황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부인할 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어려움을 염려하여 주변사람들은 성적인 피해를 더욱 은폐하려한다.

7) 피해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분노, 무력감, 자기포기 등의 감정이 안전하게 표출되고 치유되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통찰이나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건강하게 처리되지 못한다. 또한 성적 피해시 임신 등에 대하여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없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상담, 치료, 지원하는 체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다.

(3) 강릉 김양사건 개요 및 처리 현황

강릉 옥계면의 정신지체 여성인 김양은 7년간 여러명의 마을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까지 된 상태에 있었다.

김양 가족과 마을주민은 가해자인 같은 주민 한명을 고소고발 조치하였으나 김양 가족이 200만원에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면서 일단락 되고있었다.

그 뒤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측과 마을주민을 협박하고 다녔고 이 사실이 강릉 여성의전화 등에 알려지면서 여성단체가 조직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하였고 마을주민들도 가해자들에 대하여 '마을을 떠나라'는 플랭카드를 걸어놓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김양은 위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동해의 한 남자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4개월이 지나 임신 7개월이 확인되면서 친정으로 쫓겨오기까지 했다.

위와 같이 합의된 1차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경찰은 가해자의 죄질이 무겁다고 생각



하나 형법상 처벌 법규가 미비하다고 하면서 형법상 '심신미약자 간음'으로 접근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김양이 심신 미약자이지만 가해자의 위계 또는 위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 시키고 그뒤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그뒤 가해자는 74세의 첫번째 가해자외에도 59세, 64세, 55세, 30세 등의 마을 남자가 추가로 드러났고 강릉여성의전화를 비롯한 28개 단체는 공동 고발인으로 가해자 5명을 성폭력특별법 제8조에 의하여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담당 검사를 면담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검찰에서 김양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담당 검사는 김양 사건에 대하여 검찰청내에 기소 여부에 대한 회의까지 열어 가해자들 중 3명을 성폭력특별법으로 기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소조치 이후 6개월에 걸친 공판 끝에 가해자 홍씨는 2년 실형, 그 외 2인은 1년6개월 3년유예 선고를 받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신지체 여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부족, 특수성에 대한 몫이해 등으로 당초 공소권 없음 처리로 종결하였으나 2차 고소고발 조치 후 각종 언론기관을 통한 여론화, 사회문제화로 부족하나마 기소제기에 이르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4) 정신지체 여성 성폭력에 대한 적용법규

정신지체 여성 성폭력에 대한 현 형법상 적용 법규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이라는 특별법과 일반 형법 제302조(심신 미약자에 대한 간음)가 있다.

위 성폭력특별법 제8조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죄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 제302조는 "심신 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 특별법 8조와 형법 제302조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정신지체 여성의 정신능력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정신장애가 항거불능정도라 함은 정신장애가 심신상실 정도로 중할 경우에는 성폭력 특별법이 적용되고 정신능력이 심신미약 정도일 경우에는 형법 제302조를 적용하게 된다.

성폭력 특별법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정도의 정신 장애가 있고 성폭행이 이루어졌다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바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형법 제302조에 의한 경우에는 심신 미약과 성폭행 사실외에 가해자가 위계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만 한다.

(5) 법규 적용상의 문제점

① 성폭력특별법 제8조에 적용대상이 되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성' 이란 어느 정도의 정신능력을 가진 여성을 말하는지가 문제다.

이를 명백히 규정하여 주는 대법원 판례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으므로 형법 제299조(준강간)가 규정하고 있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개념을 준용할 수 밖에 없다.

일본 고법판례는 심신 상실자를 "지능지수 52, 정신연령 6세10월, 생활연령 13세 3월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피해 여성에게 상당히 중한 정신장애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심신미약 여성에 대하여는 형법 제302조를 적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가해자가 위계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성폭행이 주로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고 목격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점, 정신지체 여성이 진술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기소제기에 충분할만한 증거 및 진술확보가 수사 실무상 어려운 점이 문제라 하겠다.

② 형법제302조(심신미약자 간음)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심신미약 여성에 대한 친고죄 규정은 사실상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③ 현행법상 정신지체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성폭력특별법 적용을 위하여 고소제기전에 미리 피해여성에 대한 신체 정신감정을 하여 고소제기시 신체감정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입법론적으로는 심신미약 여성에 대한 성폭행에 대하여서도 성폭력특별법에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수사 실무상 위계 위력의 입증없이도 쉽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이전이라도 수사 실무상 위계 위력을 완화하여 폭넓게 인정하여야 한다.

(6)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

지금까지 간략하나마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대략적인 실태와 특성 및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해보면 아래와 같다.

1) 사전예방차원에서 지속적인 여성 장애인 인권 운동이 필요하다

여성장애인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 노력이 더욱 중요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여

성 장애인 인권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과 장애인으로서 우리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인 여성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 교육,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관습적인 차별까지도 철폐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성 장애인 당사자와 여성 장애인 단체는 물론 여성단체, 장애인 단체, 기타 시민 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 장애인 인권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2)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폭력은 그 특성상 피해자들에게 심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후유증을 남기고 노출을 꺼리는데다 여성 장애인의 경우 더욱 노출이 안돼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방지를 위한 첫 단계로써 성폭력 피해 실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파악돼야 할 것이다. 정부차원의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 성폭력피해 부분을 함께 조사하는 것도 고려되어야하며, 성폭력과 장애인관련기관을 통한 실태조사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실태조사에서는 양적인 통계조사와 함께 피해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피해상황과 피해의 결과, 그리고 대처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질적인 연구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3) 성폭력 관련법이 정비되고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

1994년 제정된 성폭력 특별법에는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삽입되고 98년 개정된 조항에는 시설여성장애인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 해줄 시행령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제로 피해 여성 장애인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련법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4)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개입은 매우 지루하고 힘든 과정으로 의료적인 개입에서부터 자아강화, 신뢰감 형성 부정적인 감정의 해방 등을 다루고 나아가 법적 대응 및 사회적 적응까지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일선의 성폭력 관련 상담기관과 장애인 기관 그리고 의료기관과 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간에 유기적이고 원활한 관계가 형성되어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할 것이다.

5)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위기개입을 위한 쉼터와 피해자 보호시설이 마련돼야 한다.

성폭력 피해는 매우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신변안전이 보장되고 주거 서비스와 피해여성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사후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한 쉼터나 보호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나 보호시설로써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 장애인이 기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여성 장애인 성폭력을 포함한 기타 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와 피해자 보호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6)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실시되어야 한다.

우선 장애의 영역별(지체, 언어청각, 정신지체, 시각장애 등)로 나타나는 성적욕구와 갈등의 문제점들을 연구하고 장애인 개개인에 맞는 수준으로 성교육과 자기보호능력을 훈련시켜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성폭력에 대해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을 개발하고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7) 장애인 가족과 종사자를 위한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

장애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장애인 가족상담,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 봉사자 교육 등을 통하여 든든한 지원체계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8) 성폭력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실시돼야 한다.

성폭력의 확대 재생산을 막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위한 상담, 교육 등 적절한 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돼야 한다.

9)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있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 장애인의 성폭력 피해방지를 위한 전문기구를 두어야 한다.

여성이면서 장애인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여성장애인들은 성폭력에 쉽게 노출돼 있고 그 피해의 후유증이 심각하다. 정부는 물론 여성, 장애인 단체와 각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연대하여 여성 장애인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III. 가정폭력에 있어서의 문제점

한 가정의 구성원중에서 장애인이며 경우에 가정내에서 폭행 등 물리적 폭력이 가하여 지는 경우가 흔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여성이 장애인인 경우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이고 비인간적인 폭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상속 등의 경제적 문제가 가정내에서 가족구성원간에 첨예하게 대립되어질때 장애인이 다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폭력과 협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자녀중 한명이 장애아동인 경우 그 부모로부터 장애라는 상실감으로 인한 분풀이성 상습폭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언론에 의하여 문제제기된 경우도 있었다.

최근 장애여성인 유순자씨는 중증장애인으로서 주변이 심한 남편으로부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참기 어려운 상습폭행을 당하여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사건이 최근에 가정 내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폭력사건으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1) 유순자씨 사건의 개요

유순자씨는 1급지체 장애인이며 39세의 주부로 술만 마시면 폭력을 일삼던 남편을 살해하였다. 유순자씨는 5년전부터 남편과 동거를 하였으며 1년전에야 비로소 부부로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에 있었다.

2000년 초 밤8시 유순자씨는 남편, 이웃주민 김모씨와 집에서 TV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당시 남편은 약간 술에 취해있는 상태에 있었다.

술을 마시면 바로 폭력을 행사하던 남편인지라 유씨는 남편에게 술을 그만 마실 것을 요구하였고 남편은 말과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하자 이웃주민은 자리를 뜨고 집에는 결국 유씨와 남편만이 남게되었다.

이후 남편은 소주 한병을 더 마신뒤 유씨의 머리채를 잡아 채어 방바닥에 유씨의 얼굴을 짓이 기기 시작하였다.

유씨는 남편의 폭력에 못이겨 기절하였고 남편은 119에 가정불화가 있으니 자기 부부를 데려 가라는 전화를 한 상태였다. 기절상태에서 겨우 깨어난 유씨는 부엌에서 칼을 가져다 죄씨의 등과 왼쪽가슴을 찌르게되었다.

남편의 몸에서 피가 흐르자 유씨는 119에 전화를 걸어 와서 도와달라고 호소하였고 그후 119가 도착하여 남편이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남편은 사망하였고 유씨는 구속되고 말았다.

(2) 유순자씨 사건에 대한 처리 내용

유순자씨가 남편으로부터 비인간적이고 가혹한 상습폭행을 당하여 오다가 절박한 상황에 몰려 남편을 살해한 사실이 여성계에 알려지자 지역 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에 변론요청을 하게 되었다.

그후 장애인단체와 여성단체가 공대위를 결성하고 유순자씨 구명을 위한 조직적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유씨 사건은 신문, 방송등 각 언론에 보도되고 여러차례에 걸친 공대위 회의가 진행되었고 여성단체 및 장애인단체의 의견서가 재판부에 전달되었다.

그런데 여성 및 장애인단체의 이러한 구명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15년의 중형을 구형하였다.

검찰은 유순자씨가 남편으로부터 아무리 가혹한 폭행을 당하였어도 한 생명을 빼앗은 살인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는 논지였다.

그러나 유순자씨는 거동이 극히 불편한 1급 장애인으로서 어렵게 얻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다.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무자비할 정도로 상습적

인 폭행을 당하였고 사건 당일에도 너무 심한 폭행으로 기절까지 하는 상황까지 갔다면 이는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보전하려는 한 인간의 본능에 따른 정당방위 행위에 가까운 우발적 행동이라고 하겠다.

결국 유순자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비장애인에 대한 상습적 가정폭력에 따른 관대한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었고 유순자씨에 대해서도 살인죄에 대하여 극히 이례적으로 집행 유예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는 유순자씨가 1급 장애인이고 상습적인 가정폭력의 대표적인 희생자라는 사실을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가 연대 활동으로 적극 부각시켜 좋은 결과를 얻은 성공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가정내에서의 폭력에 대한 적용 법규로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즉 가정내에서의 폭력이 행사되었을 경우 그 피해자는 일반 형법상의 폭행 또는 상습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등의 제규정에 따라 고소고발 조치할 수 있음은 물론 위 가정폭력방지 특별법에 따라 가해가족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일정공간에 대한 침입금지 등을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폭력으로부터 사전에 방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IV. 결어

폭력은 그 피해자가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인 용납하여서는 안될 반인권적 범죄이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거동이 불편하고 가정내에서의 구성원으로서의 열악한 위치등으로 상습적으로 폭행이 이루어지고 가해자의 경우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을 폭력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하여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이나 장애여성 또는 장애아동에 대한 상습폭행 등이 문제될 때는 이를 한 개인 또는 한 가정의 문제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로 의식하고 여론화, 사회문제화를 통하여 사회 일반에 대한 의식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정신지체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처벌규정을 보다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한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3부 부록



1. 인권교육활동 (인권운동사랑방)
2. 인권지킴이 119
3. 언론을 통해 본 2000 장애인인권
4. 인권관련 협장

인권교육 활동

인권운동사랑방

1. 소중한 사람

- ① 이런 생각을 해본다.
“나는 왜 소중한 존재일까?”
- ② 떠오르는 생각들을 간단히 적는다.
- ③ 둥그렇게 모여 앉아 다음과 같은 짧은 문장으로 돌아가며 발표한다.
“나 이주영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 ④ 참여자의 수에 알맞게끔, 두서너 번 반복해서 돌아가며 발표한다.
- ⑤ 이번에는 자기 오른편에 앉아 있는 사람 이 왜 소중한가를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간단히 적는다.
- ⑥ 마찬가지로 돌아가며 발표한다.
“내 옆에 있는 김수경은 여자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 ⑦ 소중한 까닭을 다 들어 본 후엔 느낀 점 을 나눠 보자.
 - “왜 소중한 존재일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든 생각은? 대답하기가 쉬웠는가 아니면 어려웠는가? 그 이유는?
 - 평소에 “인간은 존엄하다”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가?
 -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가? 옳은 말? 아니면 옳은 말이긴한데 현실과는 거리가 멀? 자유롭게 토론해 본다.

“자신이 왜 소중한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대개가 당황합니다. 평소 생각해 본 일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말은 그냥 흘려 보내기가 쉬운 말인데,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해봄으로써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뒤집어서 ‘어떤 사람이 소중하지 않다고 말할 근거가 있는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 무엇이 다른가

- ① 원으로 둘러앉는다.
- ② 우리 사회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구별하고 묶는 기준이 있다. 예를 들어 ‘종교가인 사람’, ‘지역에 사는 사람’, ‘대학을 나온 사람’ 등이다.
- ③ 평소에 눈에 띄게 느끼던 기준들을 생각나는 대로 찾아 본다.
- ④ 생각이 어느 정도 됐으면 게임을 해본다. 각자 순서를 정해 돌아가며 일부 사람들을 구별하고 묶는 기준을 소리친다. “지역에 사는 사람!”
- ⑤ 소리친 기준에 속하는 사람은 원에 일어나 재빨리 원의 가운데로 이동한다.
- ⑥ 또 다른 기준을 소리쳐 말하면 그 기준에 속하는 사람은 원안에 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둘러앉은 원으로 재빨리 돌아온다. 기준에 속하는 사람이 없으면 모두가 그냥 앉아 있으면 된다.
- ⑦ 이런 방식으로 모두가 한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을 말할 때까지 게임을 계속한다.
- ⑧ 게임을 마치면 서로 의논하여 다음의 표를 완성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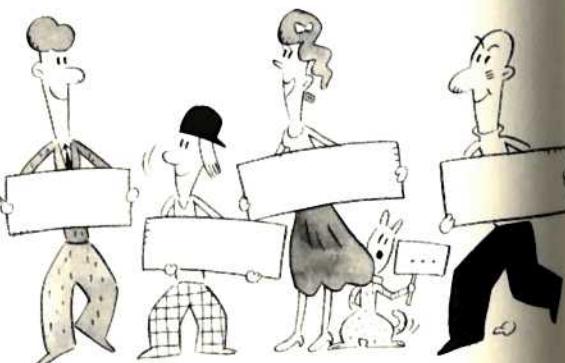
게임에서 나온 기준	게임에서 나온 기준이 '차이' 또는 '다양성'으로 인정 받을 때의 현상	게임에서 나온 기준이 '차별'의 근거가 될 때의 현상
출신 지역이 ○○인 사람	자기 고향의 언어를 거리낌 없이 쓸 수 있다.	○○지역 사람은 취직에 어려움이 있다.

⑨ 표를 완성한 후 생각해 본다. '차이' 또는 '다양성'과 '차별'은 어떻게 다른가?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유형은 '차별'입니다. 차별의 근거는 단순한 '차이'에서 만들어집니다.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비난하고 그들의 사회적 참여를 가로막는 관행과 제도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차이'가 '차별'로 변질된 예를 찾아 보기 위한 활동입니다. 예를 찾아서 분석해 보면 차별의 근거가 전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3. 여럿이 한 문장 만들기

- ① 알맞은 숫자로 조를 만든다.
- ② '인권'에 대해 정의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든다. 이 때 각 사람은 한 단어만을 말해야 한다. 순서대로 한 단어씩만 말해서 끝 사람에게 순서가 돌아왔을 때 문장이 완성돼야 한다. 각 사람은 뒷사람이 이을 말을 고려해서 문장을 잘 연결해 가야 한다.
- ③ 예를 들어 '인권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갖는' '권리입니다' 하는식으로 문장을 완성해 간다. 문장을 미리 지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돌아갈 때 즉석에서 나온 단어를 연결하여 짓는 것이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갖는 권리입니다!

- ④ 문장이 다 만들어진 후에 맨 끝의 사람은 만들어진 문장 전체를 반복해서 말한다. 예를 들어 '권리입니다'라고 한 후에 "인권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갖는 권리입니다"라고 붙여서 말하는 것이다.
- ⑤ 이와 같은 문장 만들기를 조별로 번갈아 가며 해본다. 사회자는 완성된 문장을 모두가 볼 수 있게 적어둔다.
- ⑥ 함께 만든 문장을 세계인권선언에 표현된 문장과 비교해 본다.

사전이나 법전에 정의된 말이 아니라 자신의 말로 인권을 표현해 보는 활동입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말은 확실하게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럿이 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사람의 말을 주의깊게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뒷사람의 단어 선택을 쉽게 하기 위해 배려를 해야 합니다.

4. 단어 해석

- ① 인권을 얘기할 때 흔히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다.
- ② 스스로 이들 단어에 대해 해석을 달아본다.
- ③ 예를 들어 한 친구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 정의 :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만 정의가 아니다. 어른들은 우리 청소년의 의견에 항상 공정하고 공평하게 귀기울여야 한다.
- 평화 : 우리 사회에 갈등과 싸움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 존엄성 : "빈정거리고 경멸하는 건 싫다. 협담은 싫다. 놀림거리가 되어 상처 입기는 싫다"고 느낄 때 떠오르는 단어.
- 평등 : 말로만 평등이 있을 수는 없다. 힘 없는 사람들이 겪는 불평등을 고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처방과 행동이 필요하다.

- 자유 :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자유는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 민주주의 : 우리 청소년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우리들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연대 : 정의와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에 대해 알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 권리의 상호성 : 우리 자신의 권리만큼 타인의 권리를 생각해야 한다.

- ④ 각자의 '정의' '평화' '존엄성' '평등' '자유' '민주주의' '연대' '권리의 상호성'에 대해 자기말로 해석한 단어 카드를 만든다.
- ⑤ 전체가 볼 수 있게 각 단어가 적힌 큰 종이를 벽에 붙여 놓거나 칠판을 이용한다. 각 단어 밑에 각자가 만든 단어카드를 갖다 붙인다.
- ⑥ 모두가 갖다 붙인 단어 카드를 꼼꼼히 읽어 본다.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서로 질문한다.

5. 나의 역사

- ① 종이를 가로로 펼쳐놓고 가운데에 직선을 긋는다.
- ② 선 위 부분에 자신이 성장해 온 내력을 간단히 쓴다. 예를 들어 ○○년 ○월 ○일에서 으앙! 하고 탄생, ○○년 초등학교 입학, ○○년 짹꿍과 첫사랑…….
- ③ 선 아래 부분에는 각 시기에 겪은 일 중에서 불만스럽거나 불쾌했던 경험 또는 좋았고 행복했던 경험을 쓴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을 고른다.
- ④ 각 개인의 역사를 발표한다.
 - 불만스럽거나 불쾌했던 경험은 어떤 것이었나?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 나는 그 일에 어떤 대응을 했는가?
 - 좋았고 행복했던 경험은 어떤 것이었나?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 내가 그 경험에서 차지한 역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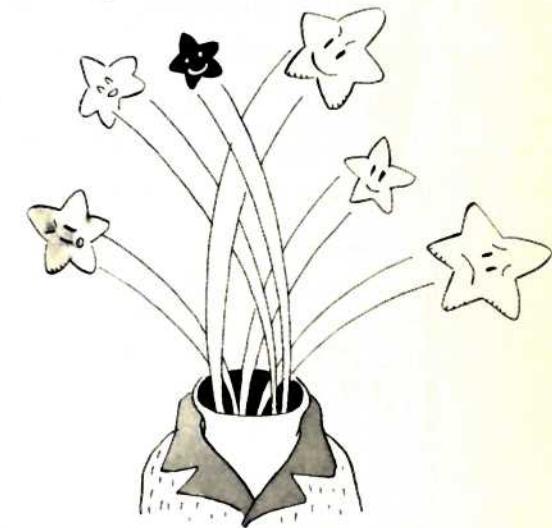


- ⑤ 각자의 경험을 비교해 본다.
 -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 불만에 대한 대응방식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 행복한 경험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했나?

자신의 성장 과정 속에서 억압과 저항에 대한 경험을 발견해 보는 활동입니다. 또한 자신이 성장할 때는 그 의미를 잘 몰랐던 우리 사회의 주요 사건이 얘기 중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등장하면 그 사건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 또는 후퇴에 끼친 영향에 대해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6. 인물 발굴

- ① 우리 주변에는 흔히 '정의감이 강하다'고 평가 받는 친구나 인물이 있다. 그런 예로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을 떠올려 본다.
- ② 내가 선택한 인물을 잘 소개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한다.
 - 그 사람을 선택한 이유는?
 - 그 사람이 연관된 구체적인 사건은?
 - 그 사람을 볼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 ③ 각자가 선택한 인물을 소개한다.
- ④ 소개된 인물들의 공통점을 정리해 본다.
- ⑤ 이번에는 인물의 선택 폭을 넓혀 본다. 우리의 역사나 다른 나라의 역사 속에는 편박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했던 인물이 많이 있다.
- ⑥ 조를 나누어 소개하고픈 인물을 정한다.
- ⑦ 각 조는 선택한 인물을 생생하게 표현해 줄 방법을 찾는다. 예를 들어 그 인물의 캐릭터를 그리거나 연설문을 작성한다거나 토막극도 할 수 있다.
- ⑧ 준비를 마치면 각 조는 돌아가며 발표한다.
- ⑨ 소개된 인물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본다.



- 소개된 인물이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는 무엇이었나?
- 소개된 인물이 추구한 변화는 어떤 것이었나?
- 소개된 인물은 어떤 실천을 했나? 어떤 방법을 택했나?
- 소개된 인물의 투쟁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 지금도 그러한 인권침해는 계속되고 있는가?

7. 춘향전 다시 말하기

- ① 춘향전 얘기를 모두들 알고 있을 것이다.
- ② 둉그렇게 둘러앉아 '줄거리 잊기'를 한다. 즉, 한 사람이 한 문장씩만 말해서 끝의 사람에 이르렀을 때 춘향전 줄거리가 끝나야 한다.
- ③ 춘향전 줄거리 잊기를 마치면 다같이 생각해 본다.
- ④ 우리가 '권리'라고 여기는 것 중에서 춘향이 겪은 인권침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⑤ 각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말하면 사회자는 춘향이 침해당한 권리들을 보기와 같이 모두 가 볼 수 있게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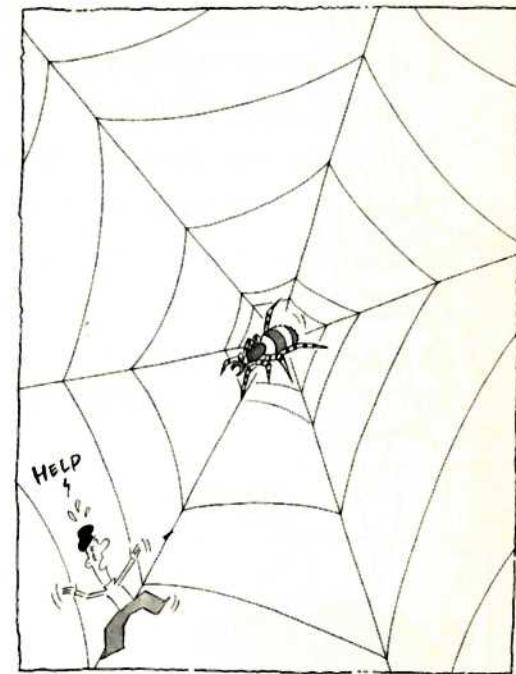
이유	침해당한 권리
매를 맞고 칼을 쓴 채 옥에 갇혔다	고문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당했다

- ⑥ 우리가 찾아낸 춘향이 침해당한 권리를 이 책 부록에 있는 내용과 비교해 본다.

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억압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자유권'의 내용을 스스로 발견해 보기 위한 활동입니다. 춘향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일 뿐 아니라 비특권 신분이자 여성인 춘향이 겪은 일들은 풍부한 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활동의 소재로 선택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실제 사건을 예로 들어 이 활동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8. 갈등의 거미줄

- ① 신분제도로 사람을 억압하던 구시대는 역사 저편으로 사라졌다. 즉, 형식적으로는 특권신분과 비특권신분이 사라지고 만인이 평등하다고 선언되었다. 그래서 좋은 변화만 일어났을까?
- ② 다음의 '갈등의 거미줄' 곳곳에는 신분제도에서 해방된 사람들에게 새로 벌어진 일들이 나타나 있다. 그 일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갈등의 거미줄에는 각 기준에 따라 사람들에게 일어난 새로운 일들이 적혀 있다. 그 빙간에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더 생각해서 채워 본다.
- ③ '갈등의 거미줄'을 끊기 위해 필요한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갈등의 거미줄을 관찰하여 필요한 권리들을 찾아서 목록을 만들어 보자.



필요한 권리	그 이유
예) 노동시간 제한	건강을 유지하고 가족이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

- ④ 우리가 작성한 목록을 이 책 부록에 있는 내용과 비교해 보자.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지 않는 '경제활동의 자유'가 끼치는 해악을 거미줄의 빙간을 채워 가며 생각해 보는 활동입니다. 거미줄에 등장한 문제들이 끼친 영향을 종합해 보면 '사회권'에 해당하는 인권의 내용과 성격을 자연스럽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9. 여권 만들기

- ① 다른 사람을 위한 인간 여권을 만들어 보자. 우리 주변에는 차별 받기 쉽거나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 ② 알맞은 수로 조를 나누어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인간 여권을 만들어 보자.
- ③ 먼저 누구의 인간 여권을 만들 것인지 대상을 정한다.
- ④ 그 사람(들)이 차별 받지 않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의 권리 to 누리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 ⑤ 조별로 의논한 결론을 다음 보기와 같이 여권에 담아 본다.
- ⑥ 각 조가 만든 '인간 여권'을 발표한다.

인간 여권	장애인어린이가 누려야 할 권리
<p>이름 : 장애 어린이</p> <p>주소 : 일상생활에서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른다. 비장애인과 분리 되어 있다.</p> <p>생년월일 : 교통사고 등 들어나는 사고 때문에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 또한 환경 오염 등이 태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 들어가고 있다.</p>	<p>우리의 서명 :</p> 

⑦ 덧붙이고 싶은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얘기한다.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지 않는 '경제활동의 자유'가 끼치는 해악을 거미줄의 빈 칸을 채워 가며 생각해 보는 활동입니다. 거미줄에 등장한 문제들이 끼친 영향을 종합해 보면 '사회권'에 해당하는 인권의 내용과 성격을 자연스럽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0. 편견의 거미줄

- ① 편견이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실제적인 사례나 하나하나의 행위로 판단하지 않고 미리 재단해 놓은 어떤 틀에 끼워 맞추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판단은 부정적으로 일반화된 생각을 근거로 한다. "그 사람(들)은 그렇고 그렇다"는 식의 판단 말이다.
- ②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담고 있는 말이 많다. 예를 들어 "지역 사람들은 도대체 믿을 수 없다", "어떤 인종은 뇌가 작아서 머리가 나쁘다" 등이다.
- ③ 우리 주변에서 이런 식으로 '편견'을 드러내는 말이나 관행을 찾아본다.
- ④ 각 사람은 준비된 쪽지에 자신이 발견한 '편견'을 적어 넣는다. 그리고 그 쪽지를 길이 50~60cm 정도의 노끈에 매단다.
- ⑤ 한 사람을 선택해 가운데에 세운다.
- ⑥ 각 사람은 자기 노끈에 적힌 '편견'을 발표한다. 그리고 그 노끈으로 가운데에 세운 사람을 묶는다.
- ⑦ 모두가 돌아가며 마찬가지 방식으로 한다.
- ⑧ 발표와 노끈 묶기를 모두 마친 다음에 서로 느낀 점에 대해 얘기 나눈다.
 - 묶인 사람은 기분이 어땠나?
 - 묶는 사람은 기분이 어땠나?
- ⑨ 이번에는 우리들의 '편견'을 바로 잡아 본다. 함께 토론하여 묶인 사람의 몸에 매달려 있는 '편견'을 바로잡을 표현이나 방법을 생각한다. 의견이 모아질 때마다 노끈을 하나씩 제거한다.
- ⑩ 노끈이 다 제거되면 묶였다 풀려난 사람의 소감을 듣는다.
- ⑪ 함께 생각해 본다.
 - 우리가 발견한 '편견'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이 고통받을까?
 - 그러한 '편견'이 생각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차별의 근거가 될 때 발생하는 구체적인 결과는 무엇일까?



편견은 어떤 대상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그러한 편견에 기초하여 각종 차별이 행해집니다. 이 활동을 직접 해보면 모델이 된 사람이 머리맡에서 발끝까지 촘촘히 묶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평소에 젖어있는 편견이 많다는 말이 됩니다. 이처럼 편견의 예를 스스로 발견하여 몸을 직접 묶어봄으로써 편견이 가지는 위험성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11. 권리간의 갈등

① 그림 1)의 한쪽에서는 어른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의 새 교칙이 통과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린다. 또 다른 한쪽에선 교실 책상에 앉아 있는 한 학생이 손에 새로운 교칙을 받아 들고 아득한 표정을 짓는다.

② 그림을 보고 얘기를 나눈다.

- 학생은 어떤 생각을 할까?
- 교사들은 어떤 생각으로 교칙을 만들었을까?
- 교칙은 잘 지켜질 수 있을까? 교사들은 어떤 방식으로 교칙을 지키라고 학생들에게 요구할까?

③ 위 그림을 우리들이 희망하는 상황으로 바꿔 그려본다.

④ 그림 2)의 한쪽에 여러 사람이 모여 한 사람을 가리키며 웅성거리고 있다. 또 다른 그림 한쪽에 따돌려진 사람이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⑤ 위 그림을 보고 얘기를 나눈다.

- 따돌려진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 따돌림을 당해 본 적이 있는가? 혹은 누군가를 따돌려 본 적이 있는가?
- 따돌림당한 대상에게 발생하는 결과는 어떤 것일까?

⑥ 위 그림을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꿔 그려본다.



⑦ 사람들 사이에서는 항상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난다. 또한 권리간에도 갈등이 있다. 그러한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본다.

⑧ 다음의 예처럼 권리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관계를 여러개 설정해 본다.

권리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관계

지도할 수 있는 권리)교사 : 학생(자율적인 의사를 가질 권리)

⑨ 우리가 설정한 ‘갈등 관계’를 보며 얘기 나눈다.

- 우리가 설정한 관계에서 갈등이나 문제는 대개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는가?
- 우리가 희망하는 갈등 해결 방식은 어떤 것인가? 다음의 표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들의 의견을 정리한다.

권리 간의 갈등	기존의 해결 방식	바람직한 해결 방식
교사 : 학생		

권리 주장에 대해 “목소리가 큰 쪽이 이긴다”는 식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갈등을 억압이나 강요로 해결한 경험이 많을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갈등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를 설정해 봄으로써 ‘권리의 상호의존성(자신의 권리만큼 타인의 권리를 생각해야 한다)’을 이해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더 나아가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갈등 해결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12. 인권 활동 찾아보기

- ① 우리 사회에는 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와 기구들이 있다.
- ②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와 지역에서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이나 조직을 찾아보자.
- ③ 직접 방문 또는 면담하여 그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 조사한다.
- ④ 직접 방문이 어려울 때는 신문이나 잡지에 보도된 내용 중에서 인상 깊은 것을 골라본다.
- ⑤ 조사한 내용을 보고서로 만들어 전체 앞에서 발표한다.
 - 우리가 발견한 개인이나 단체가 가진 활동목표는?
 - 구체적으로 벌이고 있는 활동은?
 - 그 활동의 효과는?
 -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인권단체와 기구에 대해 조사해 봄으로써 자연스럽게 인권운동이 가지는 다양한 목표와 활동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학교 밖에 존재하는 이러한 단체와 기구는 인권교육에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교육의 주체입니다.

13. 장애인 옴부즈맨(Ombudsman)

- ① 옴부즈맨이란 정부 또는 대학 같은 기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그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일반인이 제기하는 불만 사항을 접수하여 보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② 장애인이 겪는 인권 문제를 발견하고 조사하는 '장애인 옴부즈맨'이 되어 보자.
- ③ 장애인이 흔히 경험하는 인권 문제에는 어떤 것 이 있는지 토론한다.
 - 나온 의견 중에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선정한다.
 - 비슷한 문제를 겪은 사람들의 경험을 자세히 조사하여 '진



'정서'를 작성한다.

- 진정서에서 문제삼은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에게 어떤 조치를 요청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그 내용을 '요청 사항'으로 정리한다.

진정서

_____ 귀하(또는 귀중)

제출인 성명 _____

주소 _____

진정내용 :

요청 사항 :

- ④ 우리가 문제삼은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한다. 컴퓨터 통신에 글을 띄우는 일을 예로 들 수 있다.

장애인이 겪는 인권침해는 장애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표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 활동은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드러낸 후에 실제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로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좌절합니다. 이 점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